

재무감사

# 감사 보고서

-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 재무감사 -

2018. 4.

감사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2)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8

# I .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목적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해양경찰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포함)의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감사중점·대상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 6개 기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결산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8. 3. 7.부터 같은 해 3. 20.까지(10일간) 감사인원 16명과 감사보조인력 공인회계사 13명, 계 29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주요 지적사항의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8. 4. 27.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sup>1)</sup>

### 기상청

#### 1.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상청은 본청에 5국 1관 28과·3팀을 두고 있고, 29개 소속기관[1차 12개(수치모델링센터 등), 2차 17개(대구기상지청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이 있다.

기상청의 전체 인력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상청 인력 현황(2018년 3월 기준)

(단위: 명)

총원			본청			소속기관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1,291	1,326 <sup>2)</sup>	35	397	411	14	894	915	21

자료: 기상청

#### 2.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

기상청은 세출예산 현액 3,948억 원 중 3,777억 원을 지출하고 8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원을 불용하는 등 기상청의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표 2]와 같다.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2017. 1. 1. 기상청 관측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45명을 정원에서 감축(대통령령 제27692호)하여 2018년 3월 기준 정원보다 현원 35명이 초과됨

[표 2]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기관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기상청	3,853	3,948	3,777	81	90

자료: 기상청

### 3.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현황

기상청의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용현황 (비용-수익)
금액	7,687	531	7,156	3,897

자료: 기상청

###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기상청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기관	성과지표(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기상청	61	50	11	82.0

자료: 기상청

### Ⅲ. 감사결과

---

일련 번호	소관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1	기상청	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2	기상청	주의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기상청

조 치 기 관 기상청

내 용

### 1. 업무 개요

기상청은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연구업무(일기예보, 지진분석 등) 및 사무보조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2017년 12월 기준 268명)의 인건비로 81억 4,828만 원을 집행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와 제24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되, 다만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로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그리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0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를 운영비(210목), 특수활동비(230목), 여비(220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건비(110목)는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7. ~ 3. 20.) 중 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한 현황”과 같이 지출 편의 등을 사유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 3,723,722,240원([2015~2017회계연도](#))을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한 후 이 중 3,630,351,690원<sup>3)</sup>을 기간제 근로자 114명의 인건비로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기상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18회계연도부터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상청장은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3) 교부한 후 집행하지 않고 남은 금액 93,370,550원은 지출관에게 반납 처리



[별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한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기관명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2015	기상청 본청	110-02(기타직보수)	515,149,420	471,291,360	43,558,060
		110-03(일용임금)	24,223,660	24,223,660	-
	항공기상청	110-02(기타직보수)	26,155,670	26,155,670	-
		110-03(일용임금)	25,957,270	25,957,270	-
<b>소계(A)</b>			<b>591,486,020</b>	<b>547,627,960</b>	<b>43,858,060</b>
2016	기상청 본청	110-02(기타직보수)	1,261,966,660	1,248,446,250	13,520,410
		110-03(일용임금)	65,870,770	65,305,410	565,360
	부산지방기상청	110-03(일용임금)	25,600,010	25,410,170	189,840
	항공기상청	110-02(기타직보수)	52,632,060	52,632,060	-
<b>소계(B)</b>			<b>1,406,069,500</b>	<b>1,391,793,890</b>	<b>14,275,610</b>
2017	기상청 본청	110-03(상용임금)	1,513,017,320	1,478,310,160	34,707,160
		110-04(일용임금)	46,535,040	46,195,350	339,690
	부산지방기상청	110-04(일용임금)	31,000,000	30,809,970	190,030
	기상기후인재개발원	110-03(상용임금)	85,366,370	85,366,370	-
	항공기상청	110-03(상용임금)	50,247,990	50,247,990	-
<b>소계(C)</b>			<b>1,726,166,720</b>	<b>1,690,929,840</b>	<b>35,236,880</b>
<b>합계(D=A+B+C)</b>			<b>3,723,722,240</b>	<b>3,630,351,690</b>	<b>93,370,550</b>

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까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세목은 110-02(기타직보수) 및 110-03(일용임금)이었으나 2017회계연도부터 110-03(상용임금) 및 110-04(일용임금)으로 세목을 변경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기상청

조 치 기 관 기상청

내 용

### 1. 업무 개요

기상청은 2015. 1. 16.부터 2017. 12. 19. 사이에 실내건축공사 등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가람건설주식회사 등 65개 업체와 총 85건(총 16억 6,071만 원)의 수의계약<sup>4)</sup>을 체결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및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7. ~ 3. 20.) 중 위 관서가 수의계약을 체결

---

4) 「기상청 세출예산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조달계약(조달청을 통해 계약), 그 이하의 자체 수의계약(기상청이 직접 발주)을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는 수의계약 체결 가능)

결한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 85건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용인레이더 테스트베드 시설물 보강공사(계약금액 1,760만 원)” 등 3개 공사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종에 해당되어 건축분야 기술자와 피복측정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 명세(2015~2017회계연도)”와 같이 업종별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등록업체 31개와 계 48건(총 계약금액 9억 1,013만 원)의 전문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전문공사 업종별 필요 시설 및 장비요건(예시)

(단위: 만 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업체명	관련업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용인레이더 테스트베드 시설물 보강공사	'15. 5.11.	1,760	-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기술자 4명 이상 피복측정장비 등
용인레이더 테스트베드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15. 9.15.	1,824	-	금속구조물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기상기후 체험교육관 설치공사	'15. 9.25.	1,986	-	실내건축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관계기관 의견** 기상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공사에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미등록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상청장은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하여 미등록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